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67-111
https://doi.org/10.29212/mh.2024..130.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후기 충청수영의 松政

- 안면도를 중심으로 -

김명래 | 소영문화연구소

목 차

1. 서론
2. 충청수영과 안면도의 연혁
3. 송정 정책과 안면도의 송전
4. 안면도의 송정
5. 결론

초 록 충청수영의 책무는 충청도의 해방(海防)이었지만 조선후기 평화 시기에는 송정(松政) 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작동되었고 그 개연성이 여러 정황에서 나타난다. 송정은 국가에서 필요한 船材와 건축용재 및 관곽용 소나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산림 정책이다. 조선시대 안면도에는 71곳이 봉산으로 지정됐는데 '안면송전'이라고 통칭되었고, 섬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소나무는 '도송'이나 '안면송'으로 불리며 유명하였다. 이러한 안면송전에 대한 송정 관할권을 위임받은 충청수영은 220여 년 동안 안면도를 군정으로 다스렸다.

www.kci.go.kr

이러한 상황에서 안면도라는 고립된 섬에서 집행되었던 충청수영의 송정 수행의 실무 내력의 조명은 수군사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안면송전에 대한 송정을 수행했던 충청수영의 운영 방식과 그 성과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안면송전의 규모와 상태를 분석하였고, 안면송의 조달 규식과 조달 규모를 파악하면서, 송정에 따른 부수입원으로써 수영의 재정충당 방법을 추적 하는 등 송정과 관련하여 파생된 각종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송정을 군영(軍營)에서 집행토록 한 제도는 일사불란한 조직력에 의한 효율성이 있었지만 군사작전처럼 송금 위주의 강압적인 운영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외시한 결과, 백성들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며 괴리되어 갔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수영은 안면도의 송정을 220여 년 동안 수행하면서 충청수영의 필요 선재는 물론이고 어떤 때는 경기수영과 궁궐용 건축재를 비롯하여 일부는 전라도의 조선과 군선용 선재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송정의 기본인 심고 기르는 육림은 등한히 하면서, 관속들의 부패와 결탁된 도벌과 남벌이 자행되자 송전의 황폐화는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안면송전 만큼은 선재의 품질은 저하됐으나 그런대로 조달기능이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충청수영(忠淸水營), 안면도(安眠島), 송정(松政), 송전(松田), 안면송(安眠松)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www.kci.go.kr

1. 서론

본고는 충청수영에서 관할하게 된 안면도라는 특정 지역의 松政에 관하여 살펴 본 것이다. 松政이란 국가에서 필요한 戰船의 船材와 官用 건축재 및 棺槨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반 산림정책을 말한다.

조선시대 안면도는 홍주 · 서산 · 태안에 속해 있었으나, 충청수영 인근의 沿岸지역으로써 수영의 군사적 주도권이 작동되는 위수지역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안면도 松田[1]에 대한 송정(松政)은 3군 관할에서 1669년(현종 대)부터 충청수영으로 일원화되었다.[2] 안면도 송전은 宜松山으로 지정된 71개소로 이루어졌으며 안면도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송전 중에 하나였다. 안면도 소나무는 『忠淸水營事例』[3]에 島松이라는 명칭으로 조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安眠松이라고 불렀는데 품질이 우수하고, 용이한 해상 운송의 이점이 있었다.

조선의 산림정책은 '산림은 만민의 공유지'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나, 점차 산림의 私占이 늘어나고 산이 피폐해지면서, 목재가 부족해지자 산림을 보호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封

1) 배재수, 2002,「朝鮮後期 松政의 體系와 變遷 過程」, 『산림경제연구』 10(2), 22-50쪽. "松田은 광의로 宜松地와 같이 소나무가 잘 자라는 토지로 볼 수 있다. 협의로 의송지 중에서 봉산보다 격이 낮은 용도림으로 松政의 대상이 되는 국가직속지가 松田에 해당된다."

2) 『현종실록』 현종 10(1669).1.8.

3) 『忠淸水營事例』, 보령박물관 소장: 편자는 미상이고 편년은 1850년이다. 1책 60張이며 각 면은 14행이고 각행은 25자 내외로 쓰여 졌다. 충청수영의 예산운영 실무지침인 운영규정으로 볼 수 있다. 충남 보령지방에 2종의 필사본이 유행되고 있다.

www.kci.go.kr

山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을 대상으로 1684년(숙종 10)에 「諸道沿海松禁事目」이 처음 반포되어 연해지역에서 시행되었는데 松禁 19조로 이루어진 규정이었고, 이후에도 事目이나 節目 형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강화된 嚴法이 반포되었다.

이처럼 산림법은 엄격해지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지방의 군·현에서 담당했던 산림행정은 수군에게 위임되었다. 물론 소나무는 戰船을 짓고 수리하는데 그 수요가 가장 많은 이유가 되겠지만, 군에서 집행하는 송정 또한, 軍務로서 군사작전처럼 수행되면서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송정을 松禁으로 억압하며 일체의 임산물 취득을 금지시킴으로써 山林에서 생활 재료와 부식 및 연료를 채취하여 생활하는 백성들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었고, 軍政으로 다루어지는 엄격한 산림행정에 반발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8세기부터는 養松은 등한히 하면서 남벌이 자행된 탓에 송전은 황폐화되기 시작했으며, 품귀현상으로 소나무 가격이 폭등하자 송정은 더욱 문란해지며 조선말 송전의 실태는 거의 민둥산으로 松材 조달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되었다.

송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1990년대에 김선경은 권력층이 산림의 사점을 통해서 계급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고,[4] 배재수는 봉산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5] 최덕수는 봉산제가 어떻게 성립되고 운영되었는가를 해명하였다.[6] 이욱[7]과 이기봉(2002)[8]은 봉산(封山)의 개념과 그 분포에 대해 밝혔으며,

4)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 77-78호(1993): 497-535.
5) 배재수, "조선후기 封山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4-1호(1995).
6) 최덕수·박경석·이욱, "조선후기 封山制 성립에 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5-1호(1997):49-63.
7) 이욱외 2인, "조선후기 封山制 성립에 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5-1호(1997): 49-63.
8) 이기봉, 「조선후기 封山의 등장 배경과 그 분포」, 『문화역사지리』14-3(2002):1-18.

www.kci.go.kr

2000년대에 들어서 배재수는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금송 중심의 송정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9] 노성룡・배재수는 금제 중심의 송정은 민간수요에 대한 억압과 강압적 운영으로 백성들의 반발을 초래했음에도 계속 유지 강화되었고, 이것이 송정의 커다란 질곡이었다고 평하였으며,[10] 박범은 충청수사의 목재조달에 대한 일부분만을 다루었다.[11]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안면도 송전과 이 송전을 관할하였던 충청수영의 송정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안면도라는 섬 안에서 집행되었던 충청수영의 송정에 대한 조명은 수군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기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안면송전에 대한 송정을 수행했던 충청수영의 운영 방식과 그 성과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안면송전의 규모와 상태를 분석하였고, 안면송의 조달 규식과 조달 규모를 파악하면서, 송정에 따른 충청수영의 수입원으로써 수영의 재정충당 방법을 추적하는 등 송정과 관련하여 파생된 각종 문제점을 조명하였다. 이 연구의 성과를 언급한다면, 안면도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충청수군의 松政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살펴서 파악하고 조명하였음에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충청수영사례』와 충청수영에서 작성된 송정관련 사료[12]를 주로 활용하였고, 이밖에 보완 자료

9) 배재수(2002) 앞의 논문.

10) 노성룡・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전개과정과 특징”,『아세아연구』63-3호(2020): 3-78.

11) 박범, “충청수영계록을 통해본 19세기 충청수사의 지방행정”,『충청학과충청문화』29호(2020): 71-104.

12)『公忠水營都重記』1868, 奎16896 ;『各營釐整廳謄錄』奎15062 ;『忠淸水營關牒』奎15122 ;『忠淸水營所管松田成冊』奎16379 ;『忠淸水營所管按眠島甲申條風落松用遺在區別成冊』 奎17030 ;『忠淸水營卜定闕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斫株數各項雇價及裝運監色沙格裝載軍粮米磨鍊成冊』奎17032 ;『충청수영 및 운영자료』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www.kci.go.kr

로서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국역비변사등록』 등[13]의 사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안면도라는 섬을 대상으로 송정에 관한 연구를 처음 수행하면서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2. 충청수영과 안면도의 연혁

충청수군절도영(이하 충청수영)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소재하였다. 충청수영은 1447년에 도안무처치사 박배가 古巒(현 주포면 송학리 송도)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설한 것이며, 수군절도사는 무관 정3품관으로서 본영과 충청도 연해의 18 邑鎭(5개 鎭과 13개 邑水鎭)을 통할하였다.[14]

안면도는 섬이 아니라 태안반도에 부속된 곶[串]이었고, 고려 때에는 廣地鄕과 安眠所[15]였으며, 조선에서는 행정적으로 홍주·태안·서산으로 분할되었다. 세조 연간에는 송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쇄출론[16]까지 거론되었던 育林의 적지였다. 중종대에는 李之菡(1517~1578)의 '안면곶 굴착'에 관한 圖讖的 예견이 『여지도서』와 『만기요람』에 전해지고,[17] 『여지도서』에 "백사장은

13) 『船案』 奎17036; 『國譯備邊司謄錄』 79책; 『新增東國輿地勝覽』; 정약전, 안대희 역, "松政私議", 2014.

14) 『여지도서』 충청수군절도영조.

15)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 "安眠串은 옛날의 安眠所이다. 군 남쪽 1백 리에 있으며, 牧場이 있다. [고적] 廣地鄕: 군 남쪽 93리에 있다. 安眠所 모두 泰安郡 남쪽 마을까지 넘어 들어가 있다."

16) 『세조실록』 세조 3(1457).1.16. "安眠串은 (…)소나무가 있는데, 鹽夫와 雜人이 斫伐하여 없어질까 염려되니, 거주민을 刷出하고, 泰安·瑞山 등 고을과 處置使로 하여금 소나무의 斫伐을 금하게 하소서"

17) 『輿地圖書』. "安眠串在郡南五十里諺傳土亭李之菡愛賞山勢奄留數日乃曰此地後必有鑿脈通者果有本郡鄕吏房景齡獻議于監營鑿來脈通其水道今爲一島松木茂密"

www.kci.go.kr

안면도에 있다(白沙場在安眠島)"라고 기록된 것처럼 『여지도서』편찬 이전에 이미 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안면도 굴착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18]에서 언급된다. 『태안군지』[19]는 그 굴착 시기를 1645~1647년(인조 23~25)으로 보고 있다.[20] 이처럼 안면도가 섬이 된 이유는 안면곶의 외양 항로[21]를 천수만 안쪽으로 우회시켜 안흥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판목을 개착하여 白沙水道를 완성시켰기 때문이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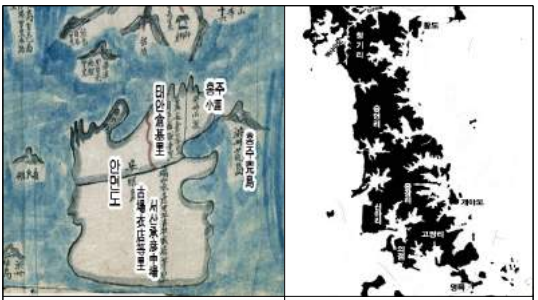

「1872년지방지도」, 태안 | 1915년경 안면도 「朝鮮五萬分一地形圖」

〈그림 1〉 안면도 지도

조선후기 안면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의 대부분은 서산군 지역이었고, 북서쪽은 태안군 지역이며 북동쪽은 홍주목 관할이었다. 우측의 안면도 지도는 1915년경에 측량된 현대적 「朝鮮五萬分一地形圖」로 간척사업 이전의 지도이다.[23]

---

18) 『瑞山郡誌』 1914년 ; 『朝鮮寰輿勝覽』 안면도조 "安眠外海漕運不便 切斷山脈以通 遂成一島" ; 곽호제(2009), 안면면장(1959)의 "읍면세 편찬에 관한 건."

19) 『태안군지』 1997. "安眠島鑿頂은 仁祖 23년에서 25년 사이(1645~1647)에 판목이 鑿通된 것으로 본다."

20) 김백운, "안면도의 면적 변화와 연안침식지역 해안선의 속성 분포", 『한국해양공학회논문집』 22-3(2010) ; 鄭良謨, "安眠島의 成島年代 小攷", 『史學論叢』38호(197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곽호제, "고려~조선시대 태안반도 조운의 실태와 운하굴착", 『지방사와 지방문화』12-1호(2004).

21) 安眠島의 外洋이 危險하고 承彦里에서 西쪽으로 五里쯤에 暗礁 蒸米여(或 쌀썩은이)에서 稅船 敗沒이 빈번하여 漕運의 안전방안으로 백사수도를 개착한 것이다.

22) 白沙水道는 [판목]이며 남면 신온리와 안면읍 창기리 사이에 蟻項을 개착한 鑿項, 『大東地志 · 大東輿地圖』의 「南掘浦」 · 「掘浦」等이다. 蟻項은 「개미목」으로 부르며, 잘록하게 된 곳에 부칠 수 있다.

23) 해안선은 1915년에 263km가 2003년에는 110km로 감소하였다. 면적은 1915년 87㎢가 113㎢로 증가.

www.kci.go.kr

근세 안면도의 행정구역은 1897년에 홍주군에 소속되었고,[24] 1901년에는 신설 오천군에 편입되었다가,[25] 1906년에는 다시 태안군에 편입되는 변화를 겪었다.[26] 안면도민들의 생활은 남북간에 생활권이 분리된 채[27], 8개 포구에서 각각의 장배로 왕래하였던 광천장[瓮巖浦: 독바위]과 생활권이 형성된 특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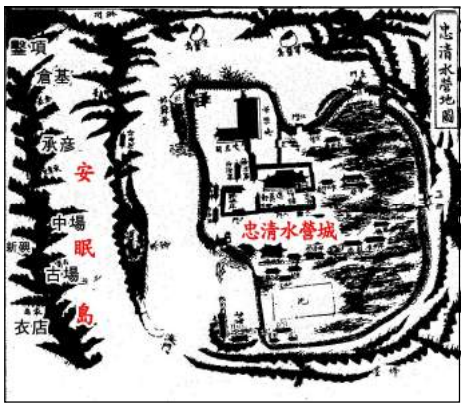

〈그림 2〉 충청수영 지도(여지도서)

충청수영에서 안면도까지의 거리는 최남단 潮箭(현 영목항)까지가 해로 15리, 최북단 倉基까지는 해로 60리가 된다. 이렇게 안면도는 충청수영과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海路인데도 불구하고 충청수영 格軍의 60%가 안면도에서 충원되고 있을 정도로 충청수영은 안면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림 2〉는 『여지도서』에 부속된 충청수영 지도인데, 행정을 관할하는 3개 행정 郡名은 생략된 채 각 里名만이 뚜렷하게 기입되어 있다. 이처럼 표시된 의도는 충청수영의 안면도에 대한 강한 松政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써, 안면도에 대한 송정의 중요성과 수영과 안면도간의 불가분한 관계를 闡明하는 송정관할지도로 볼 수 있다.

24) 『고종시대사 21』 고종 34(1897).1.14. "勅令 第8號로 忠淸南道管下 洪州 · 泰安 · 瑞山郡에 分轄되었던 安眠島를 洪州郡에 全屬시켜 管轄케 하다."
25) 『高宗實錄』 光武 5(1901).6.1. 勅令第11號 忠淸南道管下保寧郡區域內 廢止한 前水營에 鰲川郡을 新設하는 件. "第2條 區域은 洪州郡 用川面과 安眠島 · 元山島(…) 舒川郡 開也島를 該郡에 劃附 管轄할 事."
26) 『태안군지』 1997. "1906.6.24. 안면도가 태안군에 편입(박제순. 이지용의 지방구역 정리 건)"
27) 이상균, "근대화 전후 도서지역 주민생활권의 변화", 『문화역사지리』20-1(2008). "1914년에 안면도 북단에서 남단 영목까지 도로는 우마차도 다닐 수 없는 상태였다."

www.kci.go.kr

3. 송정 정책과 안면도의 송전

가. 송정 정책

정조는 18세기 말 "나라에는 大政이 있는데 송정이 그중 하나이다. 소나무 禁養은 戰船을 만들고 稅穀船을 짓는데 쓰기 위함이다. 궁궐의 건축에 대비하고 백성들의 생활물자로 그 쓰임새가 지대하기 때문에 松禁은 지엄한 것이다"[28]라고 하였다. 송정이 시행되는 禁松 지역은 「諸道沿海松禁事目」[29] 시행으로 각 지방에서 추천한 宜松地를 뽑아 封山으로 획정하였고, 이후부터 의송지는 封山·松田 등의 명칭으로 일반화되었다.

조선의 산림정책은 朱子의 山林共有論(山林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모든 인민이 공유해야 한다)과 산림은 만민의 공유지[山林川澤 與民共之]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수립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산림정책은 고려에서 권문세족들에게 독점되었던 산림을 국유(공유)화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산림의 사점이 늘어나고 피폐해지면서 목재가 부족해지자 조정에서는 산림을 보호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封山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을 대상으로 제정된 산림법은 1684년(숙종 10)에 반포된 「諸道沿海松禁事目」인데 전국 연해지역에서 시행되었고 松禁 19조로 이루어진 규정이었다. 이후에 事目이나 節目 형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화된 법률이 반포되었다.

---

28) 『諸道松禁事目』奎957, 정조 12년(1788) : 松政에 관한 규칙으로 전문 1장과 29개 조문으로 구성.

29) 『備邊司謄錄』숙종 10(1684). 2.30. : 松禁 19조로 이루어졌고, 전국 연해지역에 시행되었다.

www.kci.go.kr

松禁은 松木禁伐의 줄임말로 송정을 대표하는 용어로 쓰였다. 또, 광범위하게 쓰이는 송전은 의송산과 같이 봉산으로 지정된 소나무가 잘 자랄만한 지역으로 대개 해안가에 위치하였다. 여기서 봉산은 벌채를 금지한 산으로서 禁養하는 곳으로, 토지를 선정하여 보호한다[宜松山抄封]는 뜻이다. 봉산은 금산보다 더 특수한 목적으로 정해졌지만 둘 다 송금이 목표였으며, 봉산에서는 船材와 建築用材를, 黃腸封山에서는 황장목을 생산하여 棺槨用材와 건축용재를 조달하였다. 송전[30]은 『충청수영사례』와 『忠淸水營所管松田成冊』[31]에서 안면도의 의송산 전체를 일컫는 실무용어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안면도의 의송산 전체를 '안면도 송전'으로 표기하였다. 안면도 송전은 충청수영에서 송정을 관할하기 이전부터 금송조치가 취해진 곳이다. 일찍이 시행된 만큼 안면도에서 송정이 어떻게 시행되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면도에서는 소나무가 소금을 굽는 땔감으로 다량이 소비되었고 도남벌도 성행하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 1457년(세조 3)에 안면도민들을 진곶이[禿津串]로 이주시켰다.[32] 1485년(성종 16)에 편찬된 『經國大典』工典 栽植조는 봉산 보호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봉산을 정하여 벌목과 방화를 금지하였다. 또, 안면곶에는 萬戶가 봉산을 시찰토록 하면서 매년 봄에 묘목을 심거나 파종하여 기르도록 했다. 조선 중기에 들어서, 중종 연간에는 "산

30) 배재수, 앞의 책(2002). "松田은 광의로 宜松地와 같이 소나무가 잘 자라는 토지로 볼 수 있다. 협의로 의송지 중에서 봉산보다 격이 낮은 용도림으로 松政의 대상이 되는 국가직속지가 松田에 해당된다."

31) 『忠淸水營所管松田成冊』: 忠淸水營 編. 1冊(7張), 筆寫本(奎16379호), 表題는 '忠淸水營所管島陸沿海邑鎭松田標內壬申條植松數爻及山名周回竝錄成冊' 이고, 高宗 10년(1873)에 忠淸水營에서 同營 소관 각 郡鎭의 전년도 植松 수효와 山名, 周回 등을 조사기록한 책이다.

32) 『세조실록』 세조 3(1457).10. 2.

www.kci.go.kr

에 나무를 벌채를 금하라"[33]라는 명을 내렸고, 광해군 연간에는 "도내 각 섬의 굵고 큰 나무들도 도벌을 엄금한다"[34]는 엄명을 내리는 등 송금정책을 강화하였고, 효종 연간에는 禁山에 몰래 매장하는 행위를 신칙하여 금단시켰다.[35] 본격적인 송정은 1684년(숙종 10)에 「諸道沿海松禁事目」으로부터 구체화 되었고, 영조는 1746년에 『續大典』을 편찬하여 금산 · 봉산 · 의송산의 단속을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산림행정을 바로 세우고 그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였다.[36]

충청수영의 안면도 송전 관할권은 공조판서 金佐明이 1669년(현종10)에 안면도 송전을 충청수사에게 맡겨서 감독하도록 청하여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37] 이때부터 안면도의 송정은 홍주목, 태안군, 서산군 등 3군 관할에서 충청수영에게 일원화 된 것이다. 이는 송정체제가 일반 郡政에서 軍事 行政으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군대라는 엄격함과 효율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山林에서 식용 부식과 생활용구의 재료 및 취사와 난방연료를 채취하여 생활하였는데, 송금정책은 일체의 임산물 취득을 금지시키며 그저 松禁으로 억압만 한 결과 백성들과 괴리되어 갔고, 조선후기에는 산림이 더 나빠지는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정조는 더 적극적으로 1788년에 「諸道松禁事目」을 규정하여, 100년 전에 반포된 「제도연해송금사목」을 보완하였다. 이 사목은 소나무가 스스로 말라죽거나

33) 『중종실록』 중종 38(1543).5.5.
34)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7(1615).5.16. [3]
35) 『효종실록』 효종 3(1652).11.4.
36) 『續大典』工典 栽植조. "每年春冬令四山分授人, 栽植 每年春 · 冬二月 · 十月, 令四山分授人, 無分授處則坊里人 松 · 雜木栽植, 違者, 科罪備局所在海松子, 多數播種於山麓童濯處, 每朔本曹郎官巡審禁伐 (…) [幸行時駐蹕處] 幸行時駐蹕處, 其他講武 · 習射之場, 令所在官雜木栽植, 禁火 · 禁伐"
37) 『현종실록』현종 10(1669).1.8. "佐明請取材於安眠島, 使水使監董, 上許之"

www.kci.go.kr

불에 타서 죽은 모등 소나무 반 그루까지 반드시 비변사에 보고토록 하는 행정절차가 강화되었고, 소나무 도벌에 대한 형벌을 전문 1장과 29조문으로 강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법적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송정을 집행하여야 하는 일선 조직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송정의 조직을 살펴보자.

『충청수영사례』 [本營事蹟]조에서 안면도에 관한 첫 언급은 "현종 7년(1666)에 안면에 산직을 설치했고, 송전을 정한 지 130년"이라는 기록이다. 또, 안면도의 송정을 위임받은 충청수영의 수사 韓侃는 "숙종 7년(1681)에 안면도에 산직 50명을 설치"하였고, "숙종 14년(1688)에는 수사 金益勳이 산직 20명을 늘려 합계 75명으로 하면서, 각각 1인당 논 30斗落과 밭 20두락을 나누어 주고" 復戶의 혜택을 주었다.[38]

또, 같은 책 兵船掌조에는 "안면도 송전의 실무책임자는 兵船掌의 船將 겸 監官(色吏)이고 補軍(군관급) 6명이 보좌하였다. 여기에 산직 73명과 植松 2명 도합 75명을 두어 관리하였고, 이들 산직에게는 復戶를 내렸다"[39]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영에서 송정을 관리하는 幕僚는 비장청의 兵房裨將이었다.[40] 이와 같은 檢討를 통해서 숙종대의 「諸道沿海松禁事目」에서 정한 감관에 관한 운영방법에서 상이한 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감관을 보좌하는 보군 6명을 두어서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

38)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本營事蹟: 康熙5年丙午 設直安眠山直捧松田130年, 康熙20年辛酉 韓侃安眠山直50名設置, 康熙 27年戊辰 金益勳安眠山直20名加設合75名每各畓三十斗落田二十斗落劃給復戶"; 『공충수영도중기』,「安眠山直汰去更勿遷差事節目」: 산직의 汰去(잘못하거나 불필요한 관원의 퇴출) 등 참조.

39) 『충청수영사례』, 위의 책. "兵船掌조: 船將兼監官色吏一 補軍六, 安眠山直73名植松2名合75名 每名畓30斗落田20斗落本島田畓定給復戶無結卜只有"

40) 『오천군지』 職員名稱 및 員數와 職務, "裨將廳 兵房: 軍事務 一切를 管掌"

www.kci.go.kr

둘째, 감관과 산직의 임기와 임용에 대한 숙종대의 규정을 살펴보자.

> 宜松處를 가려 長廣이 30리 이상/인 산은 산지기를 3명, 10리 이상인 산은 2명, 10리 이하인 산은 1명만 차출하며, 30리 이상인 산은 산마다 감관 1인씩을 차출하고 30리 이하인 산은 부근의 여부에 따라 혹 일 인이 둘, 셋, 넷, 다섯의 산을 兼管하게 하되 전에 鄕所와 軍任을 지내고 威力이 있는 근면한 사람으로 각별히 골라서 정한다. 산지기와 감관의 신역은 가장 괴로운 일이니 각종 雜役 일체를 면제하고 산을 순시하는 임무만 전담하게 한다. 산지기는 年限을 두지 말고 감관은 3년으로 한다.[41]

이처럼 산직과 감관에 관한 임용과 배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정조 연간에 시행된 「제도송금사목」에는 禁養의 공과가 있으면 포상한다고 기록되었다.

> 정성을 다하여 禁養하여 울창한 숲을 만든 자의 경우, 監官 … 鎭에서는 軍任의 직책에 따라 승진시키고, 으뜸으로 만든 자는 加資를 청하도록 하고, 산지기는 營門에서 상을 주고 가장 으뜸인 자의 아들 한 사람의 신역을 면제하여 주며, 민둥산에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어 확실한 숲을 조성한 자는 己丑定式에 의하여 1만 그루 이상은 加資를 청하고 9천 그루 이하 수천 그루 이상이면 한 아들의 신역을 면제하여 주거나 …[42]

---

41) 「諸道沿海松禁事目」숙종 10(1684). "恰此抄定宜松處 長廣三十里以上山乙良 山直三名 十里以上山乙良 二名 十里以下山乙良 一名差出爲白乎你 三十里以上山 乙良每山各監官一人式差出 三十里以下山乙良 從附近或一人兼管二三四五山爲白乎 矣以會經鄕所有風力者 各別擇定爲白齊 一. 山道 · 監官等爲役最苦 凡于雜役一切免專責巡山之任爲白齊, 一. 山直則勿爲限年 監官則以三年為限..."

42) 「諸道松禁事目」정조 12(1788), 奎957. "其中殫誠禁 養 漸致蓊鬱者 監官段 邑則鄕任 鎭則軍任 各從其相當寬陞差 出類拔萃 衰然爲諸松 田之最者 計其株數 列其勞績 巡水營 相議狀聞 仰請加資 山直段 自營門施賞 最合 嘉奬者 一子蠲役 潼灌處播種栽植 長過數尺 無慮茁長者 依己丑定式 萬株以上 狀請 加資 九千株以下數千株以上 隨其多寡 鄕任軍任 量宜陞差 山直段 萬株以上 亦爲狀 聞 帖加成給 九千株以下數千株以上 一子蠲役 或別爲施賞爲齊"

www.kci.go.kr

한편 읍진의 송전은 禁松都監官, 面監官, 里山直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안면도의 松田

안면도의 소나무는 고려 때에도 선재와 궁중의 재목으로 사용되었고,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일수종의 소나무가 울창한 산지로써, 해로를 이용한 송재 운반이 용이한데 있었다. 1873년에 편찬된『충청수영소관송전성책』에 기록된 충청수영 소관 송전은 12읍 4개진에 231곳이었는데, 육지의 의송산 52곳, 可禁山 95곳, 私養山 13곳, 안면도에 의송산이 71곳이었다.

이처럼 안면도는 송전 71곳이 한 섬에 집중된 곳으로 충청수영 소관 송정의 중심지가 될 만하였다.

안면도 송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의『충청수영소관송전성책』을 분석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안면도 송전의 현황

관	산명	상태	周回(里)	조림현황	산명	상태	周回(里)	조림현황
서산	道里島山	船材斫取處	5	播種	春山洞山	稀疎處	5	播種
	串屯山	稀疎處	6	〃	直栗浦山	〃	5	〃
	欣金基谷山	〃	6	〃	大同山	〃	6	〃
	長乭山	〃	6	〃	所栗浦山	〃	6	〃
	岑於山	〃	4	〃	炭幕洞山	船材斫取處	6	〃
	化于洞山	〃	4	〃	栗浦南邊	稀疎處	6	〃
	化毒山	〃	5	〃	崑里五之山	〃	5	〃
	柯亭子山	〃	5	〃	上船隅山	〃	6	〃
	驅馬面山	〃	4	〃	長浦山	〃	5	〃

www.kci.go.kr

관	산명	상태	周回(里)	조림현황	산명	상태	周回(里)	조림현황
서산	大也島山	〃	4	〃	鉢里五之山	〃	7	〃
	新磎山	〃	6	〃	族轎洞山	〃	8	〃
	羅培山	〃	4	〃	傍浦山	〃	6	〃
	無根老末山	稀疎處	6	播種	水鐵洞山	稀疎處	8	播種
	長津浦山	船材斫取處	6	〃	馬堂基山	〃	5	〃
	移來洞山	〃	5	〃	鳥介山	〃	7	〃
	方下頂山	〃	7	〃	陸浦山	〃	6	〃
	承彦西邊	〃	7	〃	屯島山	船材斫取處	8	〃
	廣之山	〃	6	〃	多彡先浦山	稀疎處	5	〃
	長堂串之山	〃	5	〃	耆老山	船材斫取處	5	〃
	屛風東邊山	〃	6	〃	大浦山	〃	5	〃
	蘆田九味山	〃	4	〃	串堂山	〃	5	〃
	大沙串之山	〃	6	〃	彡浦山	〃	4	〃
	中山	〃	7	〃	承彦北邊	〃	5	〃
	屛風西邊山	〃	6	〃	漕箭山	〃	6	〃
	仇雪湯里山	〃	6	〃	陰山	〃	5	〃
	迄里浦山	〃	7	〃				
태안	長串之山	風落自枯處	3里	播種	墨松山	〃	20步	播種10柱
	基各之谷山	稀疎處	20步	植松100柱	短串之山	〃	200步	植松20柱
	倉之橋山	〃	20步	植松50柱	米所斤山	風落自枯處	20步	播種
	火炭浦北邊	風落自枯處	30步	植松5柱	金堤山	〃	20步	植松120柱
	崑里山	稀疎處	30步	播種	倉基山	〃	30步	植松70柱
	火炭浦西邊	〃	30步	植松200柱	加仁山	〃	50步	播種
	三峯山	〃	50步	植松200柱	加[illegible]串之西邊	〃	50步	播種
	鷄卵里山	〃	30步	植松20柱	加[illegible]浦前邊山	童濯處	7里	植松100柱
	狐浦山	風落自枯處	30步	播種	道嶼山	稀疎處	20步	播種

www.kci.go.kr

관	산명	상태	周回(里)	조림현황	산명	상태	周回(里)	조림현황
홍주	牛巖山	船材斫取處	380步	播種	東邊山	船材斫取處	300步	播種
周回(里) 計: 3리×1, 4리×7, 5리×16, 6리×19, 7리×7, 8리×3, (합 298건 22.02 ㎢)					周回(步) 計: 20보×6, 30보×5, 50보×6, 200보×1, 300보×1, 380보×1, (합 20건 0.026 ㎢)			

〈표 1〉을 통해서 안면도의 송전 71개소에 대한 송전 양상을 그 외양으로 분류하면, 船材斫取處(船材를 벌채한 곳)가 27곳, 稀疎處(나무가 성긴 곳)가 32곳, 童濯處(草木이 없는 곳)가 1곳, 風落自枯處(풍해로 고사한 곳)가 10곳으로 나타난다. 나무가 있긴 하지만 드문드문 있는 곳이 32곳으로 45%가 되는데 松材의 규격이나 주수는 알 수가 없고, 그 나머지 15%는 민둥산으로 보인다. 다만 자세한 播種 면적과 생육상태는 알 수 없지만 파종이라고 기재된 송전이 61곳으로 86%나 되고 있으며, 植松 주수가 10곳에 895주로 미소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안면도의 송전은 목재 공급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당시 안면도 송전의 당면 과제는 파종과 식송을 통한 육림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안면도의 산림은 "경복궁 수축 때 노령수의 우량목은 대부분 베어내어 큰 나무는 소량이고 수령 7,80년의 나무는 각처에 상당 잔존한다. 삼림의 대부분은 수령이 약 30년 된 壯齡林이다"[43]라는 1933년 기록이 있는데, 이 상황을 20년 전인 조선말(1910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보면, 10여 년생 정도의 치송이 대부분이고 5,60년생 정도의 소나무가 약간 남아 있는 정도로 목재 생산능력이 없는 송전으로 유추되는 것이다.

43) 하야시 쇼우조우(한국명 林省三), 『安眠島』,京城帝國地方學會 발행(1933),국립중앙도서관 所藏. "안면도 전체임야면적 7,000정보(70㎢, 불하 6,500정보, 미입목지 500정보)," "도끼 한 자루만 있으면 자고 먹고 거주하며 충분히 살 수가 있는 안면도"라고 홍보하는 내용도 있다.

www.kci.go.kr

〈표 1〉에 표시된 송전의 규모는 周回 단위로 里와 步를 사용하였다. 주회는 뜻 그대로 둘레를 의미한다. 주회 4리를 정방형이라고 가정하여 그 면적을 산출하면 약 187,000㎡가 되고, 원형으로 가정한 면적은 238,000㎡가 된다.[44] 따라서 주회 4리의 면적은 약 200,000㎡ 내외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표 1〉의 송전면적을 산출하여 집계하면 전체 면적은 약 22㎢가 된다. 그러나 이 면적은 안면도 송전 실면적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成册'에 기록된 주회(리)라는 면적단위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안면도의 송전면적은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안면도 국유림의 80% 정도인 임야 56.32㎢를 매각하면서 국유림 면적이 약 70㎢로 밝혀진다.[45] 조선총독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안면도 국유림을 매각하는데, 이에 미루어 보아도 강점 후 17년 동안에 임야를 매입하여 면적이 늘어났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따라서 조선시대 안면도 송전 면적은 1927년 당시 국유림 70㎢와 유사하다고 비정된다.

---

44) 1) 주회 4리를 ①정방형으로 가정하면 1변이 1리(360보×6×0.2m=432m)이고 면적은 186,624㎡가 되며, ②원형으로 가정하면 직경 458.6보(550.3m)이고 면적은 237,720㎡가 된다. 따라서 주회 4리는 200,000㎡ 내외가 될 것이다. 2) 정방형으로 가정할 때, 주회 20보=36㎡, 주회 30보=81㎡, 주회 50보=1,350㎡.

45) 「조선총독부관보」 제44호(1927.2.24.). "安眠島國有林入札拂下: 안면면 창기리, 정당리,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장곡리, 누동리, 고남리에 소재, 安眠島國有林은 林野면적 5,679정6단보, 地上立木 赤松(アカマツ) 817,492尺締 송목 2,584,352株." [尺締: 사방 1척 길이가 12척인 材積 단위, 12立方尺(=100才, 약 0.324㎥)]

www.kci.go.kr

4. 안면도의 송정

가. 안면송 조달

안면 송전의 첫째 목적은 군선의 造船과 改槳에 소요되는 송재의 원활한 조달이었다. 그렇다면 충청수영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각 수요처에 송재를 공급하였을까?

안면송의 공급은 비변사에서 許斫(벌목 허가)을 받아 벌채된 송재에 지정된 烙印을 지져 수요부서에 조달하는데, 이를 烙給이라고 하였다. 충청수영은 안면도 송정의 주관자이면서 船材의 수요자로서 선재를 제급하는 規式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兵船掌에서 담당하였다. 즉, 『충청수영사례』 兵船掌조는 군선 별로 新造와 개삭 시 선재의 낙급에 관해 군선의 척수와 선박 별로 신조 · 개삭 시에 지급하는 안면송의 규격과 수량을 규정하고 있어서, 군선의 소요 선재 파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6]

1804년에 丁若銓은 "현재 겨우 명색이 남아있는 봉산은 오직 큰 산과 큰 鎭밖에 없어서 영남의 거제도와 남해도, 호남의 완도와 변산, 호서의 안면도 등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산들도 모두 벌써 민둥산이 되었다."[47]라고 하였다. 이처럼 전국의 봉산들이 19세기 초에는 민둥산이 될 정도로 산림은 황폐해진 것이다.

그러나 충청수영은 선재 조달규식(1850년에 편찬된 『충청수영

46) 『충청수영사례』. "戰船新造材木庚寅定式, 稚兒松稚松並201株內10株減案191株, 初改槳稚兒松稚松並25株內 5株減 案20株, 再改槳稚兒松稚松並53株內3株減案50株, 3改槳稚兒松稚松並107株內12株減案95株/龜船新材稚兒松稚松 並19株內2株減實17株, 再改槳稚兒松稚松並47株內12株減實35株/3改槳稚兒松稚松並83株內"

47) 『松政私議』 1804년, 정약전 저,

www.kci.go.kr

사례』)에 따라 선재를 공급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나무는 大·中·小·兒·稚 5단계로 분류되며[48] 大松과 中松이 선재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 규식에서는 中松이 제일 큰 선재이었고, 兒松을 中兒松·兒松으로 나누고 稚松을 稚兒松[49]·稚松으로 나누어 모두 7단계로 세분되었다.[50] 여기서 대송 공급은 아예 보이지 않고 중송조차 희소하며 兒松 이하의 어린 송목을 주로 공급하는 상황에서, 안면 송전의 열악한 산림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 군선용 선재를 조달하는 충청수영의 규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군선의 선재 공급량을 집계하는 데에는 관선의 종류와 보유척수 그리고 신조·개삭 시 소요되는 선재량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수영사례』를 참고하여 船種 별로 신조·개삭 시에 지급되는 船材의 규격과 수량을 〈표 2〉에 분석하였다.

〈표 2〉 官船의 新改槊時 안면송 조달규식

소속	선종	척수	本板長把	재목	신조	초개삭 30朔	재개삭 60朔	삼개삭 90朔)	四五改
本營	1戰船	1	14	稚兒松 稚松	201	25	53	107	
	2戰船	1	11	〃	〃	〃	〃	〃	
	龜船	1	10	稚兒松 稚松	146	19	47	83	
	防船	1	10	稚兒松 稚松	96	12	22	32	
	防船	1	8	劈鍊	39	5	10	30	
				引鉅	28				
	兵船	2	8	劈鍊	23	4	7	10	32
				引鉅	23				

48) 『統營管下右沿各邑鎭封山雜頃松株成冊』 1787년, 奎 17031.

49) 稚兒松: 소나무의 크기에 따라 중간치 소나무[中松], 작은 소나무[小松], 애소나무[兒松], 어린 소나무[稚松]등으로 구분되었으나, 樹齡과 흉고직경(DBH) 등 구체적 구분은 파악되지 않음.

50) 『충청수영사례』 兵船掌. "戰船新造材木, 稚兒松稚松並201株內 10株減 案191株, 初改槊稚兒松稚松並25株內 5株減 案20株, 再改槊稚兒松稚松並53株內 3株減 案50株, 3改槊稚兒松稚松並107株內 12株減 案95株"

www.kci.go.kr

소속	선종	척수	本板 長把	재목	신조	초개삭 30朔	재개삭 60朔	삼개삭 90朔)	四五改
本營	伺候船	7	4	添材本3株	-				
	別搜討船	2			-				
	搜討船	2			-				
	亭子船	1	7		-				
	安眠津船	1	4	島松2株	-				
	梭船	8		陸松4株 加給	-	4	4	4	2
	補用庫船	3		改槳 島松2株	-				
	塘報船[51]	1		〃	-		2	2	2
	採鰳船	47		改槳 島松2株	-		2	2	2
忠淸 邑鎭	戰船	-	中松 中兒松 稚兒松		190	20	25	31	
	龜船	-	中兒松 稚松 兒松 稚兒松		140	19	39	51	
	防船	-	兒松 稚松		92	9	19	28	
	兵船	-	添 本 兒稚松 3株		-				
	伺候船	-	添材本 3株		-				
京畿 황해	京畿戰船	-	中松 中兒松 稚兒松 稚松		201				
	京畿龜船	-	中松 中兒松 稚兒松 稚松		145				
	京畿防船	-	兒松 稚兒松		99				
	京畿兵船	-	兒松 稚兒松		94				
	江華御駕亭子船		兒松 稚松		56				
	黃海道 戰船		中兒松 兒松 稚兒松 稚松		158				
	漕船	-	中兒松 兒松 稚兒松 稚松		106				

주) 실지급은 5-6%정도를 감액, 改槳其間은 新造 후 30~36개월
자료) 김명래(2020) 논문[52]에서 표내용 가필,

〈표 2〉에서 전선의 경우 새로 배를 지을 때에는 200여 주의 송목이 소요되는데, 어린 소나무들로 선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송목이 품귀해지자 풍해로 인한 피해목을 枯松·去皮松·偷斫松·風落松으로 분류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기까지 하였다.[53] 1798년 기록에서 통영에서는 전선 1척을 건조하는

51) 塘報船: 斥候兵이 旗를 갖고 배의 망루에서 적정을 살펴 알리는 배.
52) 김명래, "19세기 전반 충청水營의 수군編制와 운영事例", 『사학연구』 137호(2020).
53) 忠淸水營編, 『忠淸水營所在各樣船隻及改造株數區別數爻成冊』, 규장각 소장 奎17038, 1冊(4張), 筆寫本, 1874년(高宗 11) 정월에 忠淸水營에서 각양 船隻數 등을 보고한 책, 끝에 節度使 李의 수결이 있다.

www.kci.go.kr

데 사용된 송목은 大 15주에 中 24주, 小 56주를 포함해서 총 178~220주라고 하였다.[54]

또 1791년 편찬된 『弘齋全書』는 전선 新造에 송목 191주, 초개삭에 20주, 재개삭에 50주, 삼개삭에 95주가 소요된다고 기록되었다. 이처럼 18세기 말에 작성된 기록에서 전선 1척당 소요 선재가 약 200여주로 나와 있는 것은 『충청수영사례』와 비슷하다.

그러나 18세기 기록에는 신조 전선 1척당 대중소 규격의 소나무가 半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표 2〉의 경우에는 稚兒松과 稚松으로만 201주를 책정하였다. 송목의 주수는 같다고 하더라도 대형 소나무와 어린 소나무는 재적량과 품질 면에서 대단한 차이가 있을 터인데, 그러한 선재로써 어떻게 배를 짓고 수리하였는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안면 송전은 1850년대만 하더라도 1873년의 산림상태보다는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고,[55] 군선의 개삭 기간은 1817년에 펴낸 『船案』에서 36朔이 30朔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이유도 船材의 품질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안면송에 대한 烙給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충청수영에서 사용되었던 烙印은 『공충수영도중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營자 2개, 忠자 1개, 風자 2개를 합해서 전부 5개가 사용되었다.[56] 낙인은 3종류로 각기 용도별로 쓰임새가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風자 낙인은 풍락송을 낙급 하는 용도로 추정되지만 營자와 忠자 낙인에 대한 사용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낙인 취급이 소홀했다는 조정의 논의가 있었다.

---

54) 金鉉丘, "조선후기 造船業과 造船術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81호(1998) "『統制營節目』, 1798" 재인용

55) 『忠淸水營所管松田成冊』. 〈표 1〉에서 송전 대부분이 소나무가 듬성듬성하다는 '稀疎處' 기록 참조.

56) 『公忠水營都重記』1868년, 奎16896. "烙印 5箇內 風字 2 忠字 1 營字 2 紙筒上"

www.kci.go.kr

> 安眠島의 배를 만들 재목에 烙印하여 주는 일을 軍校에게 맡기지 말고 差員을 정하여 거행한 뒤에 巡營에 보고하고 순영이 장계로 아뢰는 것으로 시행하고, 몰래 벤 자는 刑配하되 감히 收贖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재목을 가져다 쓰는 것은 반드시 본도에 의지해야 할 것인데 근년에 함부로 베는 일이 허다하므로 … 57)

낙인을 일개 軍校에게 맞긴 것을 지적하면서 差員하여 책임 있는 관리에게 일임시키며 순영에까지 보고하도록 절차를 개진해야 한다는 논의 내용이다.

이미 「諸道沿海禁松事目」에서 낙인 사용은 "斫伐 날짜를 營門에서 미리 알리고 烙印을 지참시켜 군관과 소관 관리를 보내어 입회하에 작벌하게 하며 定數대로 烙印하여 중간에서 남벌하는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충청수영에서는 사목에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함부로 낙인을 사용한 사례라 하겠다. 〈표 3〉은 대궐에서 사용되었던 안면송의 조달에 관한 烙斫 기록이다.

〈표 3〉 궐내 조달 안면송의 烙斫

리 명	재목 長(尺)	末圓徑(尺)	주수	산직	비고
창기	40 30	2.0-2.5 2.0-2.8	4 2	이종민 편대관	창기 烙斫
승언	40 30	1.8-2.5 2.0	4 1	이완득 박흥용	승언 烙斫
중장	40 30-35	2.0-2.1 1.9-2.3	2 6	김판북	곶내 烙斫
의점	30	2.0	1	박춘신	곶내 烙斫
계			20		

자료) 『忠淸水營卜定闕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斫株數各項雇價及裝運監色沙格裝載軍粮米磨鍊成冊』,[58] 헌종 12년(1849), 규장각 소장(奎17031)

57) 『고종시대사』7, 고종 11(1874).11.6.

58) 『忠淸水營卜定闕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斫…成冊』(奎 17032) : 忠淸道 水營에서 闕內의 差備役에 소용되는 材木·烙斫株數와 斫伐·曳下·桴軍 등의 雇價 및 監色·沙格·裝載軍의 粮米를 계산한 책이다.

www.kci.go.kr

표에서 낙급되는 재목은 길이가 30~40척이며 평균 말구직경이 2~3척 정도가 되는 비교적 우수한 안면송으로 볼 수 있다. 대궐에 조달하는 재목이므로 가장 좋은 소나무를 택벌했을 것이다. 이처럼 안면송은 대궐의 건축재로도 공급되었는데 유일하게 자세한 기록이다.

또, 안면송 許斫에 관한 기록으로 1869년(고종 6)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안면송을 전라도의 鎭과 倉에 낙급한 『충청수영관첩』의 기록을 살펴보자(〈표 4〉).

〈표 4〉 안면송의 수요처 船別 벌목허가

연월일(수신)	수요처	원인	株數	비고
1869.10.06	위도 鎭戰船	전체破傷 今改造	120	안면도 許斫
1869.11.25	함열창 鹹字船	개조 年限已過	160	안면도 허작
1869.11.26	법성창 善成律字漕船	三隻船 新造松材	160	許斫 안면도
1869.12.09	군산창 雨字漕船	勢將持本板 改造	120	허작 안면도
1869.12.24	법성창 興字漕船	소근진 致敗	160	허작 안면도

자료) 『忠淸水營關帖』,[59] 규장각 소장(규 15122)

위 표는 충청수영 이외의 타도에 선재를 낙급한 내용으로써 안면송은 전라도의 漕船과 군선의 선재로 조달되었던 실적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안면도에서 생산하여 조달되는 송재는 연간 몇 주나 되었을까?

충청수사 민광승은 1796년(정조 20)에 "본도 각 읍진의 군선 및 강화의 교동과 경기고을의 각 선박은 조정의 정식대로 新造·改槩 시 이곳 소나무를 사용하는데 매년 2천 주가 넘는다"

59) 『忠淸水營卜定闕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斫…成冊』(奎 17032) : 忠淸道 水營에서 闕內의 差備役에 소용되는 材木·烙斫株數와 斫伐·曳下·桴軍 등의 雇價 및 監色·沙格·裝載軍의 粮米를 계산한 책이다.

www.kci.go.kr

고 장계하였다. 이처럼 안면도 송전에서는 매년 송목 2천주 정도를 충청수영 및 수군진과 읍진과 경기수영에서 소요되는 선재를 공급하였는데 운반이 용이하여 예운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점이 있었다. 『忠淸水營卜定闕內…成冊』에는 벌목운반 雇價가 1주당 斧軍(벌목공)은 1전5푼, 曳下軍[60]은 3냥5전, 桴軍(목도꾼)은 5푼씩 모두 3냥7전이라는 노임 기록이 있다.[61] 그러한 이점에 더하여 안면도에서는 일부 수요처에 필요한 선재를 낙급하는 대신에 필요한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조달한 사례가 있다.

경기수영이나 강화부에서 필요한 선박을 안면도에서 건조한 사례는 "교동은 (…) 물력이 매우 적어 戰艦을 모두 안면도에서 만들어 오는데"[62]라는 기록과, "御駕船의 기한이 차 (…) 안면도에서 새로 짓기로 비국에…"[63]했다는 보고는, 안면도에서 직접 배를 건조했다는 사실이 된다. 인조 연간에 경기도에는 적당한 봉산을 구하기 어려워 선박을 건조할 곳을 안면도라고 생각하였다.[64] 이처럼 안면도에서 건조한 배를 수요처에 인도하였다면 防納(郡縣에서 군선을 사는 것) 형식이 된다. 선박 건조에서 선재는 제외 하더라도 운반비, 인건비, 기타 재료비와 경비 등이 부가되므로 금액 정산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850년대 기록인 『충청수영사례』는 그러한 조선소 조직과 업무가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한때라도 조선소 운영을 했다면 수익이 있었을 것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어서 그 실정은 알 수가 없으므로 차후의 과제로 넘긴다.

---

60) 벌채한 목재를 船所까지 운반하는 役軍으로, 曳運軍 혹은 運載軍으로도 부른다.
61) 앞의 책(奎17932). "1株당 裝載軍 30명씩 600명 粮米 4石, 裝載船 10척에 沙格 117명 15일간 粮米 31石9斗, 斫伐曳下斧軍雇價 및 裝載軍, 沙格 등 雇價 合下 180냥7전7분"
62) 『승정원일기』 영조 4(1728).5.13.
63) 『국역비변사등록』130책, 영조 32(1756).4.19. "江華留守 趙榮國 등이 御駕船 논의"
64) 송기중, 2019, 『조선후기 수군 연구』, 역사와 비평사.

www.kci.go.kr

넷째는 風落松도 하나의 목재로써 수요처에 조달했는데 그 처리에 관해 살펴보자.

풍락송은 風災를 입어 뽑히거나 부러진 소나무를 말한다. 1731년(영조 7)에 큰 피해를 당했는데 "지난번 풍재 때 부러지거나 뽑힌 의송산의 소나무가 몇 만 그루나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65]라고 하는 막대한 피해보고가 있었다.[66] 풍락송이 워낙 많다보니 이 풍락송만으로 수군 영진과 읍진의 군선은 물론이고, 조운선 건조 방안까지 제시되었다. 1874년(고종 11)에 충청수영에서는 소속된 각 선박의 개조에 드는 풍락송의 주수 및 낙급 방법과 배의 용도를 중앙에 成冊으로 엮어 보고했다.[67] 이 내용은 호도의 채복선 2척에 개조용으로 풍락송 각 2주, 補用庫船 2척에 개조용으로 풍락송 각 1주, 梭船 2척에 개조용으로 풍락송 각 1주, 원산의 津船 1척에 개조용으로 풍락송 2주를 배당하여 도합 22주[68]를 낙급한 사실이었다.

「諸道松禁事目」은 "산 소나무는 물론이고 말라 죽거나 불에 타 죽은 소나무 한 주라도 사소한 숫자까지 낙급하여 비변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눈 여겨 볼 것은 풍락송을 上折, 腰折, 空心, 拔根 등 4가지로 세분한 점과, 향후 용도에 대하여 보고하는 등의 철저한 행정체제가 되겠다. 그토록 엄격한 규정에 따른 1885년(고종 22) 안면도의 태풍피해 보고내용은 풍락송의 상태, 주수, 산직 성명, 里名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었으나 정작 쓸 재목은 47주 중에 2주뿐인 사례도 있었다.[69]

---

65) 『승정원일기』영조 7(1731).7.4. "낭청을 보내 적간하고 오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啓."

66) 『승정원일기』영조 7(1731).7.14. "金在魯의 啓."

67) 『忠淸水營所在各樣船隻及改造株數區別數爻成冊』, 1冊(4張), 奎17038, 고종 11(1874).

68) 『忠淸水營所屬各樣船隻中改造風落松船七隻與各船材木株數成冊』奎17039, 고종 12(1875).

69) 『충청수영소관안면도갑신조풍락송용유재구별성책』, 奎17030: 高宗 22년(1885)에 忠淸水營에서 安眠島內의 風落松의 사용여부와 遺在를 조사·기록한 책이다.

www.kci.go.kr

나. 송정에 의한 충청수영의 재정 확보

충청수영은 안면도에 대한 송정을 담당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충청수영의 재정에 얼마나 기여되었는지 전체적인 수입액수 파악은 자료 미비로 어려운 편이다. 수영은 원래가 재원이 부족한 곳이다. 정약전은 "수영은 田土稅를 받을 권한이 없어 본래 가난한 진영이다. (…) 오로지 소나무가 있을 뿐이다"[70]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충청수영의 경우에도 안면도의 송정 담당은 재정 획득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수영은 국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받지 못했고, 부족분에 대한 재정확보 방침이 명문화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었다. 충청수영의 공식적 세입은 番錢 5,808兩과 結錢 3,300兩을 합한 9,108兩으로 180여명의 입방군에 대한 給代로 6,564냥, 나머지 2,544냥은 육물가와 군선의 신조·개삭비 충당금 정도로 지출되었다. 그리고 需米 400石이 매년 전입되었지만 군관들의 饌價 정도로 사용되었고, 屯稅는 잡곡을 합하여 연간 300석 정도가 걷히는데 수영의 잡비로 쓰였다.[71] 이처럼 명문화된 비용 이외에 수영에서 가장 큰 지출항목은 수사를 비롯한 우후, 비장 등 간부와 영속들의 급료가 되는데, 『충청수영사례』는 그러한 인건비는 적시하지 않았다. 인건비는 기본적인 중요 예산이지만 누락시킨 것이다. 『오천군지』[72]에 기록된 1895년 당시 충청수영의 직원봉급표에는 수사, 우후, 비장, 장교, 영리, 진리, 영노비, 사령 등의 봉급을 금전(錢)과 현물(米)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리고 그 표에는 각 직원 별로 금전은 '수군 番錢'으로, 현물은

70) 정약전, 안대희 역, "松政私議", 『소나무 정책론』(2014), 주)민음사.
71)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72) 1911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편자와 원본의 소재는 불명이다. 현재 유행되는 필사본은 1915년에 이기한 것으로 3본이다. 내용은 '從前 충청수영에 관한 舊慣'이라는 부제와 같이 충청수영이 중심이다.

www.kci.go.kr

‘수사가 支撥함’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수사가 支撥함’은 수사가 봉급을 준다는 의미이고, 그 재원은 수사의 재량이나 慣例에 의해 수취된 재정으로 볼 수 있다.[73] 유형원이 수군의 내재적 문제를 비판하면서 주장한 개혁론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할만하다.[74]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충청수영은 안면도 송정을 담당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획득은 어떤 방법이었을까? 충청수영은 부족한 재정을 획득하는 방법을, 송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는, 松贖은 수영의 재정 획득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었다. 松贖은 송금 범법자들에게 실형대신 징수한 贖錢이다. 이와 같은 송금 위반자에 대한 송속 판결은 수사의 강력한 권한이었고, 속전은 국가에 바치지 않고 해당 수영에서 전용할 수 있는 수입금으로 취급하였다. 충청수영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刑房은 수영의 송전과 17개 읍진의 해문 30리 이내는 물론 사양산을 정탐하며 각별히 禁斷 명령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안면도 송전은 매월 따로 정한 將吏들이 犯伐 유무를 염탐하고 5개 都山直은 삭망에 馳告한다”[75]고 하였다. 이처럼 형방은 「송금절목」의 사법을 관장하는 부서였다. 행형 집행에서 治盜棍은 水使가 쓰되 도적을 다스리거나 소나무 벌채에 관련된 범죄인에게만 쓸 수 있

73) 김명래, “오천군지의 편찬과 충청수영의 舊慣”, 『한국문화』98호(2022):399-431. 오천군지의 봉급표 오류를 바로 잡아 1895년 당시 충청수영 본영의 간부와 필수 종사원의 봉급표를 작성.

74) 『磻溪隨錄』. “水軍役은 本役 이외에도 각종 잡세를 수취와 잡역에 동원된 경우가 많아 역 부담이 연간 50필정도가 된다. (…) 수군 지휘관은 재정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역가를 착복하여 각종 지출에 이용에 이용하였고, 처자식을 봉양하거나 뇌물에 이용한다.”

75)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刑房兼隨陪大小文簿當擧行 舟師松田17邑鎭海門30里內母論宜松私養山一一廉探別禁斷 安眠松田每朔別定勤幹將吏廉探犯伐有無五都山直朔望馳告陸山春秋監官馳告”

www.kci.go.kr

었다.[76] 그만큼 松禁 범죄는 중죄인으로 취급되었고, '송정은 곧 군무'라는 인식하에 수사의 송정 권한은 때때로 監司보다 강하게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연해지역 수령의 송정관련 범죄에 대하여 처벌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77] 이와 같은 권한을 뒷배로 위세 등등한 수영의 감관과 군교들은 인근의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속전을 거두는 것도 정약용이 지적한 것처럼 무리한 징수는 그 속전을 갚기 위해 또 도벌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78]

충청수영에서 松贖을 전담하는 修繕庫라는 금고를 운영했던 기록으로, 1874년(고종 11) 희정당에서 어사 박용대가 아뢴 啓請에 언급된다.

> "安眠島는 세 고을의 경계에 있는데, 松政은 오로지 水營에 속합니다. 그 영문에서 창설한 修繕庫는 松贖을 받아쓰는 곳인데, 한 해의 속이 많으면 5, 6천이나 되고 적어도 2, 3천이 못되지는 않으니, 軍校들의 농간과 섬 소나무가 줄어 없어지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수선고를 폐지하고 송속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니, 박용대가 아뢰기를, "소나무는 한 번 베면 다시 움트지 않는 것인데, 한결같이 송속을 받아쓰면 섬 소나무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79]

---

76) 「흠휼전칙」: 1778년(정조 2)에 형구의 규격과 사용범위를 정한 법전, 水使는 重棍과 大棍을 사형 죄를 지은 중죄인에게 사용할 수 있었고, 中棍은 우후 · 營將, 소곤은 첨사 · 만호 · 權官 등이 사용하도록 규정.

77) 「諸道沿海松禁事目」숙종 10(1684). "법을 잘 봉행하지 않은 수령과 변장은 營門에서 경중에 따라 決杖하되, 결장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파면한 뒤에 죄를 청한다. 沿海의 수령과 변장의 褒貶도 道臣과 帥臣이 함께 상의하여 하되 動漫을 따져 黜陟의 증빙자료로 삼게 하여 禁松令에 무게를 더하도록 한다."

78) 정약용, 『牧民心書』工典, 한국종합DB: "백성 한 사람이 囚禁되면 나무는 100株나 더 베어진다. 본래 나무 때문에 붙잡혀 들어왔으나 도리어 나무의 힘으로 풀려 나가며, 본래 나무 때문에 죽게 되었으나 도리어 나무의 힘으로 살게 된다. 즉, 나무를 또 도벌하여 그 돈으로 贖錢을 내는 것이다."

79) 『승정원일기』 고종 11(1874).11.3.

www.kci.go.kr

이와 같이 수선고와 송속은 박용대의 의견대로 폐지되었다.[80] 이때는 충청수영이 폐지되기 20년 전으로 안면도 송전의 생산력이 쇠태하고 있을 때였다. 소나무가 품귀 상태로 松材 가격이 고가인 상황에서는 속전을 내고도 이득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송속은 오히려 수사·감관 등 관속과 도벌꾼들이 서로 유착되도록 유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수영의 입장에서는 속전이 적어도 2, 3천 냥이나 되는 거금이었으니 재정 확충 차원에서 외면하기가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다.

둘째는, 수영의 재정 확보를 위해 직접 송재를 私賣하는 방법이 되겠다.

여기서 송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필요한 송목의 주수를 부풀려 허가 받거나, ㉯허가 받은 주수에서 일부를 빼돌리거나, ㉰수요부서에 공급할 때 소량을 除給하기도 하고, ㉱아예 허가 이상으로 벌목하는 등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私賣錢은 수영의 부족 재정을 보충해주는 큰 재원이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수영의 재정에 보태면서 그중 일부는 관속들이 서로 나누어 착복하는 경우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충청수사 이현택이 사용 후 남은 송목 47주와 다른 건에서 1,022냥을 착복한 사건이다.[81] 이 경우는 수사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비장과 영속들에게 급료로 체급(帖給, 관아에서 지급함)했다는 공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적으로는 범죄이고 공적으로는 수영의 재정 충당이었으니 사법적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온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건화가 되어도 수

80) 『승정원일기』 고종 11(1874).11.6. "충청우도 암행어사 박용대의 별단에 대한 의정부의 계."

81) 『국역비변사등록』 191책, 순조 즉위(1800).8.16. 本道의 수사 李顯宅이 부임한 뒤로 松政을(…)

www.kci.go.kr

영의 재정 충당이라는 업무 수행상 관행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탈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영의 非違는 수사의 개인 품성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았다.[82]

셋째는, 충청수영에서 안면도 주민들에게 부과하여 걷어 들인 현물 수입에 대하여 살펴본다. 『충청수영사례』에서 언급된 세목 중에서 소모 잡품과 六物의 貿納[83] 및 賦役은, 안면도민에게서 捧納(물품을 납부 받음)받는 것이므로 송정에 의한 충청수영의 세입에 해당된다. 이 징수 내역을 〈표 5〉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표 5〉 안면도에 부과된 충청수영의 징수 물목

해당부서	징수품	징수 내역	대상
①본영	瓢子	瓢子 230개 貿納(價4兩) 逐年應下[84]	안면 山直
	生麻	生麻 235근 貿納(價14兩) 間年應下[85]	안면 산직
②예고	蛤醢	價米 2두5되 貿納	안면 100호
③공고	生麻	生麻 200근(每100斤價米5斗) 官聽出給[86]	안면 산직
④영선고	火木	858단 및 숯[炭] 15석[87]	안면도 5개리
⑤육물고	海草	400級 無價年例納	안면 5도산직
	生麻	302斤(價木22疋)중 약96근 7疋出給	안면 산직
	瓢子	瓢子92개(價木9필)중 약20개 2필出給, 9月捧	안면 산직
	賦役	6-7月 捧上 造㲉	안면 토병

자료) 『忠淸水營事例』

82) 노성룡, "조선후기 산림과 松政", 『역사랑』13(2021)/ koreahistory.org. 2021(1).

83) 貿納: 조선은 필요 물품을 백성들로 부터 무상으로 납부 받았다. 그러나 생산, 운반, 납기일 등의 문제로 돈으로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를 선정하여 그 물품을 구매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납부 기관은 현물 대신 값으로 거두어 민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상납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貿納이라고 한다.

84)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逐年應下조 18兩 230介內 4兩出給安眠山直貿納 每兩23介合92介 14兩使令路資 / 間年應下조: 44兩 生麻740斤價內 24兩3秩每兩16斤13兩1㲉 14兩安眠山直 6兩元山屯長

85) 『충청수영사례』, 위의 책. 蛤醢1石… 米2斗5刀安眠100戶貿納

www.kci.go.kr

표에서, 영선고는 매월 땔나무[火木]를 안면도의 의점리에서 58단, 고장리 93단, 중장리 173단, 승언리 230단, 창기리 304단 등 5개 里에서 도합 858丹의 장작과 숯[炭] 15石을 징수하였다.[88] 이러한 화목 마련은 대부분의 산이 송전인 안면도에서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장작이 없으면 柴草(땔나무로 쓰는 마른 풀)로 대체하기 위해서, 大木 1把는 장작으로는 80단이며, 시초로 대체하면 58속(1속은 4단)에 해당된다는 환산식까지 있었다.

육물고에서는 안면도의 산직과 토병으로부터 육물의 일부를 징수하였는데, 도산직 5명에게는 밧줄 재료용 海草 400級[89]을 무상으로 例納(전례에 따라 납부)을 받으며, 산직들에게는 生麻 96근(價7필)[90]과 瓢子(바가지) 20개(價2필)을 부과하였고, 안면도에 편성되어 있는 토병들에게는 6-7月 중에 밧줄 꼬는 賦役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재정획득 유형은 ①본영과 ②예고는 3건이 貿納(각주 84 참조)이고, ③공고는 出給(물건을 내어 줌) 1건, ④영선고는 無償(대가나 보상이 없음) 1건, ⑤육물고는 無償 1건과 出給 2건에 賦役 1건 등 도합 9건이다. 여기서 무상 2건과 부역(밧줄을 만드는 노역) 1건을 제외하면 貿納 3건과 出給 3건이 된다. 이러한 징수에는 市價에 부합되는 가격을 지급했는지, 물품을 수

86)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生麻300斤200斤安眠山直/100斤元山屯長每100斤價米5斗式正月自官廳出給

87) 『충청수영사례』. 火木每朔15把炭15石安眠5里輸納/ 安眠衣店1朔80丹內減22丹存58丹, 古場1朔136丹內減43丹存93丹, 中場1朔240丹內減67丹存173丹, 承彦1朔320丹內減90丹存230丹, 倉基1朔424丹內減120丹存304

88) 『충청수영사례』. 火木每朔15把炭15石安眠5里輸納/ 安眠衣店1朔80丹內減22丹存58丹, 古場1朔136丹內減43丹存93丹, 中場1朔240丹內減67丹存173丹, 承彦1朔320丹內減90丹存230丹, 倉基1朔424丹內減120丹存304

89) 『충청수영사례』, 위의 책. 海草400級安眠5都山直無價年例納/安眠土兵6-7月捧上造塗/瓢子92介價木9疋內7疋代出給使令2疋代出給安眠山直

90) 『충청수영사례』, 위의 책. 生麻302斤11兩8戔價木22疋間3年會下內12疋鎭撫通引使令7疋安眠山直3疋

www.kci.go.kr

매하였을 때 봉납하는 데에 수반되는 노동력 보상이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山直들에게 준 復戶의 혜택이 19세기 중반기 즈음에는 아예 무시된 채 조세와 잡역이 부과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넷째는, 풍해가 심할 때는 製鹽 수입을 획득할 수 있었다.

안면도 송전은 1792년(정조 16)에 풍해를 극심하게 입었다.[91] 이때의 풍락송은 재목으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품이어서 소금을 굽는 화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 수영에서 소금가마[鹽盆]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주민들을 염부로 고용하여 생계를 도우면서, 소금을 구워 수익을 획득하는 방안이 있었다. 당시에 煮鹽法(前熬製鹽法)은 막대한 땔감이 소요되면서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92]

요컨대, 충청수영은 안면도의 송정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수영의 재정을 보충하는 재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다. 첫째는 犯伐者에게서 받는 松贖이었으며, 둘째는 송목의 密賣錢을 재정에 보태는 것이며, 셋째는 육물 및 노역의 획득이었고, 넷째는 재해로 인해 발생된 풍락송을 화목으로 자염을 만들어 수입금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었다.

다. 송정 관련 문제점들

수영의 송정 집행은 송금을 주목적으로 禁壓的인 군사 행정으로 일관되었다. 그처럼 강력한 송정에도 불구하고 18세기부터

91) 『정조실록』정조 16(1792).12.26. "비국 당상 서유린이…청하니 허락하다."

92) 전오제염법은 1정보의 염전에 70정보의 솔밭이 필요했다. 1일 생산량은 鹽盆 하나에 한 가마 정도였고, 鹽盆당 5명 이상이나 필요했다. 연료비와 인건비가 총비용의 2/3 이상이었고, 소금 1가마 가격은 쌀값의 1/2 정도가 되는 高價였다. 시칠리아의 Saline di Trapani 염전은 BC. 8세기에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천일염전인데, 조선에는 천일제염법이 1907년에야 도입되었다.

www.kci.go.kr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쓸 만한 목재가 품귀해지자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였다. 1789년(정조 13)에는 "木物 값이 상승하여 조운선의 改槊과 新造 비용이 元定價로는 태반이 부족하다(비변사등록, 175권)"고 하였다. 이처럼 목재 가격이 급등하자 棺 가격이 1675년에 租 5~10石이었으나 1825년에는 米 15~30석 정도로 올랐다.[93]정약전은 "백성들이 관을 구하기 어려워 草葬을 치러야 할 지경"[94]이라고 하였다. 棺價가 米 15-30石(作錢價, 米1石=5냥)이라면 대략 100냥이 넘는 액수로 논 1斗落 가격을 능가하는 고가인 것이다.

이처럼 고가품이 된 소나무는 탐관들에게 축재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영의 관속들이나 인근 백성들은 엄벌에도 불구하고 안면도 송전의 낙락장송들을 마구 도벌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송정의 파행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실록에는 안면도의 송정에 관련된 많은 유형의 사건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편이다. 그 중에서 안면도 송정의 파행적 실태가 잘 드러나는 탐관의 부정 사례 중에 하나이다.

안면도는 封山인데도 도끼와 자귀가 날마다 드나들어 도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다가 함부로 일구는 폐단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아름드리 목재가 이미 남김없이 다 베어지고 播植하는 규정도 방치되어 거행되지 않으니, 당초 이를 거듭 금하지 않은 帥臣과 수령은 의당 죄가 있거니와 도벌한 사람이나 개간한 사람 또한 당률이 있으니 반드시 염탐하고 검찰하여 준엄하게 勘斷해야 한다.[95]

김정희는 암행어사로서 안면도의 송정실태를 수차례에 걸쳐 탐색해본 결과, 禁松만이 민둥산이 된 송전을 예전과 같은 울

93) 이우연, "18 · 19세기 山林荒廢化와 農業生產性", 『경제사학』34(2003).
94) 정약전, 앞의 책 : "오늘날 극에 달한 폐단은 환곡과 송정이다"
95) 『정조실록』권16, 정조 7(1783).10.29.

www.kci.go.kr

창한 소나무 숲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원론적 판단을 하였다.[96] 본래 島松은 군선 건조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관청을 보수할 때 도송을 請得하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었고, 수사는 관청 보수를 핑계 삼아 안면송을 청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빼돌린 나무를 私賣하여 사욕을 채우기도 하였다.[97]

송정에 관련 비리는 연이었고 전형적인 부정사례를 〈표 6〉에 요약하였는데 모두 수사가 직접 가담된 것으로 시사되는 바가 크다.

〈표 6〉 전형적인 수사(탐관)의 부정사례

탐관	기간	범죄 내역	하수인
①이현택	1799 -1800	船材를 줄여 남은 47주 중 10주와 퇴선 밀매- 550냥, 선재 12주와 퇴판 등 밀매- 380냥, 선재 4주 밀매-92냥 등 착복	비장・영속 帖給
②윤희중	1822 -1824	戰船을 건조하거나 개삭할 때마다 남벌·사매하여 착복. 군선 4척 개삭에 선재를 4주 만 사용-- 군선의 성능저하	비장・船將・이속 결탁
③조석태	1824 -1826	송목 44주 남벌, 풍낙송 642주 은닉, 황학루 개건 송목 20주-밀매 400냥 착복, 귀선 개삭용 송목 17주 240냥 착복	비장・船將・이속 주도

자료) ① : 국역비변사등록 191책, 1800(순조 즉).8.16.
②, ③ :「忠淸右道暗行御史金正喜進書啓別單」

또, 원산도의 別將에 불과한 곽문영이 술수를 부려 漕船 감독 자리를 얻은 다음에 안면도에 들어가서 "송금을 핑계로 饒民(살림이 풍족한 백성) 李良文에게서 200냥을 토색하고 도송 12주를 도벌했으며, 벼 40석과 錢 1,300냥의 세금을 착복"[98]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관속들의 침학은 수영의 강압에 억눌려 주눅이

96) 『순조실록』 순조 26(1826).6.25. "「忠淸右道暗行御史金正喜進書啓別單」"
97) 김명숙, "암행어사 김정희가 본 19세기 충청우도의 사회상",『한국사상과문화』37 (2007).
98) 『고종실록』고종 11(1874).11.8. "충청우도 암행어사 박용대의 서계에 대해 회계하는 병조 계목."

www.kci.go.kr

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연되었다. 조선의 3禁은 소나무·소·술에 대한 정책인데, 송금이 가장 중요하여 암행어사에게는 송금수칙인 『諸道御使事目』[99]을 지참시켰다. 그래도 충청수영 관속들은 남벌과 침탈을 자행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아뢴 '암행어사 李建昌의 별단'을 보자.

> 安眠島의 封山은 근래 公用을 빙자하여 멋대로 나무를 베어내고 있으니 놀랍습니다. 水營의 영속들이 벌목을 금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贖錢을 거두기도 하고 붙잡아 들이기도 하므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섬은 본래 水營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고 4리는 瑞山에 속해 있고 1리는 泰安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섬의 송전에 관한 일은 두 고을에 맡겨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심고 남벌을 금하도록 하며, 수영에서는 봄과 가을 한 차례씩 摘奸하는 외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게 하고, (…) 이 섬이 날로 헐벗는 것은 몰래 베어내고 濫伐하는 데서 연유합니다. 그런데 수영의 영속들이 이를 빙자하여 침탈하니, 이것은 바로 부근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함정입니다.[100]

충청수영의 松政때문에 산림은 오히려 남벌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진다면서, 원래대로 서산군과 태안군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수영의 송정이 불신 받는 이유는 강압과 수탈에 대한 반발심으로 볼 수 있다. 『오천군지』는 충청수영의 最惡慣行 2개 중에 하나가 "범죄인 및 잡기자에게 松贖이라고 하여 돈을 내도록 엄히 가두고 장을 치고 뇌물을 받고서 풀어주는 일"[101]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미

99) 『諸道御使事目』(『정조실록』정조 7년10월28일)은 암행어사에게 지급되는 염문규찰의 직무수행 사항이 8도별로 게재된 규정집으로, 비변사에서 올린 것이다.

100) 『승정원일기』고종 15(1878).7.19.

101) 一. 犯罪人及雜技者에게 稱以松贖披贖하고 捉囚嚴杖에 受賂放釋事, 一. 有財產無權力者에게 不孝不悌姦淫等罪名言動加捉囚하고 受賂放釋事.

www.kci.go.kr

정약용이 “松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송정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안면도는 조수 간만차가 크고 갯벌이 넓은데다가 해안가에 鹽木 구입이 용이하므로 무허가 鹽盆이 수시로 생겼다. 煮鹽 생산은 많은 화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림보호차원에서 송전 인근에는 금지된 업종이었다.[102] 또 안면도에는 閒雜人[103]의 이주가 산림에 폐해를 주었고, 불법 개간과 경작도 단속과 치죄가 반복되었다. 게다가 안면도에는 숙종대(1684)부터 ‘봉산에 埋葬 금지’하는 지키기 어려운 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안면도는 모든 산이 봉산이다시피하므로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는 참담한 상황은 심각하였다.

> 산지기 등은 대대로 섬에서 살고 있는데 埋葬을 금한 뒤로는 시체를 묻을 곳이 없는 탓에 시신을 육지로 나올 때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거나 침몰하는 일이 종종 생겨 애통함이 골수에 사무치는 일입니다. 변통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되니, 앞으로 섬사람이 사망할 경우 수영에서 군관을 보내어 집 뒤 수목이 없는 곳에 표식을 하고 매장하게 한 뒤 일일이 본사에 보고하여 상세히 문서에 기록함으로써 뒷날 적간할 때에 이를 가지고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병신년에 암매장되었던 분묘도 다 파내었으며 그 후로 매장한 곳은 없습니다. 禁山에 암매장하는 폐단은 참으로 금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산기슭에 假殯해둔 것이 헤아릴 수가 없으며 (…) 古峙로부터 바닷가에 이르는 수십 리의 땅엔 소나무는 벌거벗고 분묘만 빽빽하여 소나무 기르기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10여 리의 경계를 정하고 매장을 허락한다면 솔밭에 암매장하는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104]

---

102) 『국역비변사등록』72책, 숙종 45년(1719) 1월 17일. “金濬 및 李樫이 조사한 安眠島의 문제(…)”

103) 閑人과 雜人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商人으로 보인다.

104) 『승정원일기』 영조 2(1726).2.8. “낭청 崔命柱가 안면도를 적간한 결과 보고.”

www.kci.go.kr

이처럼 島民이 사망하면 수영에서 군관을 보내서 置標(假葬)하고 일일이 본사에 보고하고, 문서로써 후일 摘奸할 때에 이것을 검토[憑考]하도록[105] 했으나, 도민들은 가족이 죽어도 무덤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고초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민들은 송정 집행의 추세와 강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문제는 도민들의 勞役과 군역이 되겠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 실상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첫째는 물품 봉납과 노역 동원의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 군선 건조 비용 중 六物價는 숙종 30년(1704) 「양남수군변통절목」에서 규정되었다. 六物은 수군이 역가의 일부를 면제받고 대신 진에 내던 것인데, 진에서 물품가를 역가로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었다. 이 절목에서는 육물가 이외에도 材木曳下軍과 木材匠人의 給代비용, 군선에 사용되는 돛 등과 기타 비용도 수군 역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진의 군선 개조비용은 진 자체에서 조달하여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 이전에 통제영에서는 군선을 개조하기 위해 영에 거주하는 백성을 동원했다. … 통제사 金滄은 병고에서 1,000냥을 가져와 조 1,000석을 사서 이를 盡分取耗해서 그 모곡을 원곡에 합산했다가 배를 만들 때 목재의 曳運役價로 사용하게 했다.[106]

이처럼 통제영에서는 보역창을 세워 曳運役을 면제하였는데, 충청수영은 그런 사례가 없다. 伐採는 운반뿐만 아니라 造材와 集材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노역이 부과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때 役價를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문제가 되며, 이외에도 크고 작은 잡역으로 안면도민들의 생활상은 고단

105) 『국역비변사등록』79책, 영조 2(1726).2.8. "山直이 죽으면 水營에서 軍官을 보내 置標 · 虛葬"

106) 송기중, "조선후기 통제영의 군선 건조와 양송처 관리", 『영남학』78호(2021): 205-238.

www.kci.go.kr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안면도에는 격군이 265명으로 충청수영 전체 格軍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107] 인구 비례나 지역적 안배 및 거리기준을 고려치 않은 격군의 편성이 주목된다.[108] 일반적으로 격군은 '鎭에서 5리 이내 주민[鎭下居民 五里以內]'으로서 '일회 호출에 승선[一乎而乘船]'이라는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海路 15리에서 60리나 떨어진 안면도 주민들을 차출하였을까?

격군은 軍役중에서도 가장 고역이며 천역에 속하였다. 안면도의 병역의무자 대부분이 格軍[109]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는 충청수영이 안면도의 송정을 관할하면서 행정적 주도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격군 차출이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면도 주민들은 수영의 각종 負役에 수시로 동원되었을 개연성이 큰데 이 또한 주민의 생활에서 큰 고역 중에 하나였다. 통제영의 경우에는 "군선을 개조와 건조할 때는 土卒이나 格軍을 모았고 급료는 자체적으로 마련했다"[110]는 기록에서 부역자를 위한 유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충청수영의 경우에는 주민을 유급으로 부역했는지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차후 과제로 넘긴다.

107)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能櫓448名內75名營內21名金神22名用川65名元山104名漕箭68名中場47名承彦46名倉基"
108) 김명래, 앞의 논문.
109) 『여지도서』에서 집계된 안면도 인구는 478호에 남자 808명, 여자 758명이다. 이 집계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연령 불문하고 格軍 비율이 1/3이나 되고, 이중에 장정(16-60세)이 1/2 정도로 추정된다.
110) 송기중, 앞의 책, 461쪽.

www.kci.go.kr

5. 결론

본고는 조선후기 충청수영의 안면도에 대한 松政 전반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충청수영은 1669년(현종 10)부터 안면도의 송전의 松政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송정이란 松禁과 동의어로 소나무 벌채를 금지하고 국가에 필요한 松材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안면도는 고려부터 천혜의 소나무 생산지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았고 조선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안면도 소나무는 安眠松이나 島松이라고 호칭될 정도로 유명하였고, 충청·경기 수영의 군선용 목재와 관용목재를 연간 2천여 주를 조달한 실적이 있다. 안면 송전은 宜松山 71처로 구성되었고, 감관과 보군의 감독을 받아 山直 73명과 植松 2명이 주재했으며 충청수영의 兵船掌에서 담당하였다.

둘째, 안면도에서 충청수영의 松政은 水營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되었다. 松贖이 수영의 재정으로 충당되었고, 빼돌린 송목을 사매하여 재정을 보충하였다. 그 방법은 송목의 주수를 부풀려 허가받거나, 허가받은 주수에서 일부를 빼돌리거나, 수요처에 除給하여 남기거나 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탐관들이 전액을 사취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營屬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수사와 관속들이 한통속이 되어 犯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했으나, 근절시키지 못하고 育林을 등한시 한 결과 안면도 송전은 황폐화되기 시작하였다.

www.kci.go.kr

셋째, 충청수영은 軍船을 비롯한 각종 관선의 烙給 수량을 규정하고 있었다. 안면송을 조달하는 烙給 절차는 단 한그루의 고사목이나 風落松일지라도 備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철저하였다. 烙印 사용은 斫伐 날짜를 營門에서 미리 알리고 烙印을 지참시켜 군관과 소관 관리를 보내어 입회하에 작벌하게 하며 定數대로 烙印하여 중간에서 남벌하는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넷째, 전체면적의 80%가 송전인 안면도민들의 생활은 충청수영의 松政에 밀접하게 종속되었고, 사실상 軍政體制에서 여러 가지 침학을 받게 되는 형편이었다. 松政의 집행 강도에 따라 안면도 주민들의 생활은 제약될 수밖에 없으니, 고충이 컸다고 보여 진다. 게다가 산림 벌채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주민들이 부역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크고, 동원된 주민에게 정당한 노임을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인구 비례로 볼 때 안면도는 과도하게 많은 격군이 편성된 곳이었다. 이처럼 고역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상은 安眠島라는 이름처럼 安眠할 수 있기에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안면도 송전은 섬 전체면적 87.4㎢의 80%인 70㎢나 되었다. 이만하면 소나무 2백만 주를 넉넉히 育林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 소나무를 100년 정도 기른 후 부터 매년 1%씩 벌채를 하고 또, 그만큼씩 식재를 한다면, 연간 2만 주를 벌채 할 수 있게 된다. 100년생 이상 된 대송을 연간 2만 주씩 생산된다면, 충청·경기·궁궐의 재목까지 조달하고도 남아돌아 비축까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충청수영에서는 연간 2천 주를 조달하기에도 벅차했었고 19세기 말에는 그나마도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안면도의 송정을 파악하고 송전의 생산량을 계량적

www.kci.go.kr

으로 비판해 보면서, 산림정책은 강력한 법에 의한 금압보다 주민들과 공생을 도모하는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명해 보았다. 앞으로 안면도에 관한 송정 자료가 더 발굴되어 안면도의 송정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사료

『忠淸水營事例』
『鰲川郡誌』

2. 단행본

배재수, 『朝鮮後期 山林 政策史』, 임업연구원, 2002.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 연구』, 역사와 비평사, 2019.
하야시 쇼우조우(林省三), 『安眠島』,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논문

김명래, “19세기 전반 충청水營의 수군編制와 운영事例”, 『사학연구』137, 2020.
_____, “오천군지의 편찬과 충청수영의 舊慣”, 『한국문화』98, 2022.
김명숙, “암행어사 김정희가 본 19세기 전반기 충청우도의 사회상”, 『한국사상과 문화』37, 2007.
김백운, “안면도의 면적 변화와 연안침식지역 해안선의 속성 분포”, 『한국해양공학회논문집』22-3, 2010.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77-78, 1993.
노성룡・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전개과정과 특징”, 『아세아연구』 63-3, 2020.
박 범, “충청수영계록을 통해 본 19세기 충청수사의 지방행정”, 『충청학과 충청문화』29, 2020.
배재수, “조선후기 封山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4-1, 1995.
_____, “朝鮮後期 松政의 體系와 變遷 過程”, 『산림경제연구』 10-2, 2002.
배재수・김은숙, “1910년 한반도 산림의 이해”, 『한국산림과학지』 108(3), 2019.

www.kci.go.kr

송기중, “조선후기 통제영의 군선 건조와 양송처 관리”, 『영남학』 78, 2021.
이기봉, “조선후기 封山의 등장 배경과 그 분포”, 『문화역사지리』 14-3, 2002.
이상균, “근대화 전후 도서지역 주민생활권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20-1, 2008.
이우연, “18 · 19세기 山林荒廢化와 農業生産性”, 『경제사학』34, 2003.
이욱 외 2인, “조선후기 封山制 성립에 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5-1, 1997.
정약전, 안대희 역, “松政私議”, 『소나무 정책론 외』, 주)민음사, 2014.
鄭良謨, “安眠島의 成島年代 小攷”, 『史學論叢』38, 一潮閣, 1970, 국립중앙도서관소장.

4. web site

(web) 한국사 DB/ 金鉉丘, “조선후기 造船業과 造船術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81집, 1998, 211-258쪽.
(web zine): 노성룡, “조선후기 산림과 松政”, 『역사랑』 v.13, 2021/ koreahistory.org. 2021(1).
(web) 한국고전종합DB/『新增東國輿地勝覽』;『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經國大典』;『續大典』;『輿地圖書』上20집;『國譯備邊司謄錄』79책;『高宗時代史』21;『牧民心書』工典;『磻溪隧錄』卷二十七 兵制.
(web)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B/『諸道松禁事目』 奎957;『船案』 奎17036;『公忠水營都重記』 1868, 奎16896;『忠淸水營關牒』奎 15122;『忠淸水營所管松田成冊』 奎16379;『忠淸水營所管按眠島甲申條風落松用遺在區別成冊』 奎17030;『忠淸水營卜定闕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斫株數各項雇價及裝運監色沙格裝載軍粮米磨鍊成冊』奎17032;「1872년 지방지도」 태안, 서산.
(web) 국립중앙도서관/『조선지지자료』 1911, 조선총독부.
(web) 태안군; https://www.taean.go.kr/『태안군지』1997;『태안군지』201

www.kci.go.kr

〈Abstract〉

The Policy for Pine Trees (松政) of Chungcheong Suyeongseong Fortress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Anmyeondo Island –

Kim, Myung-Rae

By the late Joseon Dynasty, Chungcheon Suyeong Fortress had jurisdiction over the policy for pine trees (松政) on Anmyeondo Island. The policy for pine trees was a forest policy for procuring pine trees for timber (船材), construction materials (建築用材), and inner and outer coffins (棺槨用). The pine trees from Anmyeondo Island were renowned, as they became known by the common nouns '島松' (Pine Trees in the Island) or '安眠松' (Pine trees in Anmyeon Island) and had been protected, being used as timber and construction materials of the royal court even in the Goryeo Dynasty. 71 places were designated as Bongsan (封山) in Anmyeondo Island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se were collectively called 'the pine forest in Anmyeondo Island (松田),' which accounted for 80% of the area of the island. Chungcheon Suyeong Fortress took full charge of the management of pine trees in the island beginning in 1669 (10th year of the reign of Hyeonjong of Joseon). As the military organization called Chungcheon Suyeong Fortress operated the forest, there was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its management. Yet, as it ignored residents' living convenience by focusing on an oppressive ban on pine trees (松禁) like military operations, it caused resistance from the people and became divorced from their needs.

www.kci.go.kr

As Chungcheon Suyeong Fortress implemented the policy related to pine trees in Anmyeondo Island for more than 220 years, it supplied construction materials for Gyeonggisuyeong Fortress and the palace as well as the timber required for it, as well as some timber for shipbuilding (漕船) and armed ships (軍船) in Jeolla-do. However, as it ignored the need to plant and grow trees, the essence of the management of pine trees, by the 19th century, Suyeong government officials' greed and tyranny deepened. Devastation of the pine forest worsened, but the governmental forest policy kept the ban on pine trees (松禁) from being improved.

Chungcheon Suyeong Fortress' policy on pine trees was a special case which was implemented on an island called Anmyeondo Island. The need for research was raised as the subject suitable for examining the real condition of the policy for pine trees. Accordingly, we examined the procurement of pine trees in Anmyeon Island, the acquisition of finances, and the problems through Chungcheon Suyeong Fortress' policy for pine trees implemented in Anmyeondo Island.

Keywords: Chungcheon Suyeong Fortress (忠淸水營), Anmyeondo Island (安眠島), The policy for pine trees (松政), Pine forest (松田), Pine trees in Anmyeon Island (安眠松).

www.kci.go.kr

www.kci.go.kr